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삼천리  
제정2012. 2. 17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삼천리(이하 ‘회사’라고 한다)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권한)

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### **제5조(위원장)**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선임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(이하 “직무대행자”라 한다)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결의를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그직무를대행한다.

## **제 3 장 회 의**

### **제6조(소집권자)**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**제7조(소집절차)**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12시간 전까지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**제8조(결의방법)**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

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# 제9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#### 제13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재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14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2012. 2. 24)

1. 이 규정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제8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규정 제8조는 이사회에서 이 규정을 제정한 날부터 2012년 4월 14일까지 현행 상법 제391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.